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38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용혜인·김성환·이수진

김재원 • 양부남 • 이해식

강경숙 · 이광희 · 박정현

전종덕ㆍ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과 달리 그 특성상 출자금 변동이 빈번하여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최저한세 제외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협동조합이 세율(0.4%)에 따라 등록면허세 최저한세인 11만2,500원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액이 2,812만5,000원에 달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등록면허세 11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5,382만원이며, 연평균 31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면허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이 대도시에 설립 및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중

과세를 적용받아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대도시 중 과세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수도권 주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는 대도시에 법 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은 예외를 적용받지 못함.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유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본 법 취지를 벗어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외하여 제28조제1 항제6호바목(건당 4만2백원)을 적용하고,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 등).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 호 중 "법인을"을 "법인(협동조합등은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등기에 대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8조제2항"을 각각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 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 중 "제28조제2항·제3항"을 "제28조제3항·제4항" 으로 한다.

제78조제9항 중 "제28조제2항·제3항"을 "제28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 을 "같은 법 제28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 략)	중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	
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	
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	
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	
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	
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 당 세율을 적용한다.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 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 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 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 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 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 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 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 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 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 우
- 2. (생략)
- ③ ~ ⑧ (생 략)

1
제28조
<u>제3항</u>
2.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간음)

제28조(세율) ①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 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

제2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 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등기 에 대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3) ---

- 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생략)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 ④ <u>제2항</u>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법인(협동조합등은
제외한다)을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3항
<u>⑤</u> 제3항
⑥ 제3항

- <u>⑥</u> (생 략)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생 략)
 -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 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 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 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u>(7)</u> (연행 세b앙과 같음)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u>স</u>
28조제3항
제28조제3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